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제 안 설 명

강감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현재까지 대중교통수단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해 생활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며, 특히 미흡한 대중교통 공급문제로 위례신도시 관련 철도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12일 위례선 노면전차 사업을 포함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으나, 현행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립 선로로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를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부가 확정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법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바,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